뇌물수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변호사 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

[부산지방법원 2015. 11. 27. 2014고합587, 441(병합), 603(병합), 802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전현민, 윤철민(기소), 천헌주, 서동민(공판)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해인외 4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48,000,000원에, 피고인 3(대판:피고인 2)을 징역 1년 및 벌금 40,000,000원, 피고인 2(대판:피고인 1)를 징역 5년,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, 피고인 3(대판:피고인 2)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.

다만, 피고인 1, 피고인 3(대판:피고인 2)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,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24,000,000원을, 피고인 3(대판:피고인 2)으로부터 20,000,000원을 각 추징한다.

피고인 1, 피고인 3(대판:피고인 2)에 대하여 위 각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(대판:피고인 2)의 2008. 4. 25. ~ 4. 26.경 뇌물수수의 점, 2010. 8. 13.경 및 2010. 10. 15.경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2(대판:피고인 1)의 2008. 4. 25 ~ 4. 26.경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.

피고인 3(대판:피고인 2), 피고인 2(대판:피고인 1)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. . . _

1

1

【이유】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[이유]

]